

미국편

미국 법무성, ADM 사 판매 목표 설정 여부 조사

미국 법무성 트러스트국과 FBI는 Archer-Daniels-Midland Co. 와 아시아에 소재한 가축 사료 첨가제인 라이신 생산 업체들이 가격 통제의 수단으로 각 회사의 판매 목표에 관하여 합의하였는지를 조사중이라고 정통한 소식통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Archer-Daniels사 내부에 회람된 문서로서 여기에는 Archer-Daniels사 및 경쟁자들의 월별 판매 목표 및 실제 판매량이 기술되어 있으며, 현재 정부 측에서 입수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기업체 임원들은 이 문서가 분기별로 곡물 가공업자인 Decatur, Illinois에게 회람되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의 조사 목적은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지역별 라이신 판매 목표를 설정하였는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합성 라이신은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는데, 돼지와 닭에 기름기가 적은 살이 빨리 쪄도록 도와 준다.

정통한 소식통은 정부 조사관들이 Archer-Daniels사의 고위 임원들이 판매 수치를 정하기 위해 도쿄, 하와이 및 로스앤젤리스에서 다른 제조업체 임원들을 만났는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Archer-Daniels사의 고위 임원 한 명이 지난 3년간 당해 조사에 관하여 정부 측에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한다. 이 임원은 38세의 Mark E. Whitacre로서 Archer-Daniels사의 라이신과 구연산을 제조하는 생체제품부를 운영하여 왔다.

Whitacre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정부는 은밀히 미국, 아시아 및 유럽의 호텔 방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화할 수 있었다. 이 회합에는 Archer-Daniels사 및 경쟁관계에 있는 라이신 및 구연산 제조업체들의 고위 임원들이 참석했다고 당해 조사에 관여한 정통한 소식통은 밝혔다.

당해 문서를 열람한 사람들에 따르면 월별 판매 목표를 정한 문서에 판매수치가 포함된 아시아계 회사들 중에는 일본의 Ajinomoto Inc. 및 Kyowa Hakko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Ajinomoto사의 미국 지사인 Heartland Lysine 사는 6월 27일 FBI가 시카고에 소재한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요원들은 고객 목록 및 마케팅 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문서들을 수색하였다고 Heartland Lysine사의 부사장 겸 감사인 Dennis Mullane은 말했다.

Kyowa Hakko사의 미국지사인 Biokyowa사를 대리하는 반트러스트 전문 변호사인 Steven A. Feiss는 미국 정부가 아직 이

문제에 관해 어떠한 회사 직원도 소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 회사는 라이신 산업에 관한 문서를 요청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소환장은 받은 상태이다.

(95. 7. 27.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일본 필름 시장의 반경쟁적 거래 관행에 미국 통상법 301조 발동 움직임

최근에 미국업체가 외국내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 통상법 301조 발동을 청원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하여 301조를 발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Eastman Kodak사는 일본의 후지 필름사가 불공정거래관행을 하여 동사의 일본 필름·인화지 시장 진출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대표부(USTR)에 대하여 301조 발동을 요청하는 청원(5월 18일)을 제출한데 대해 미무역대표부가 조사를 착수하기로 결정(7월 3일)함으로써 미·일간에 새로운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Kodak사의 청원 내용을 보면 세계 최대의 시장점유율(미국 70%, 유럽 40%)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Kodak사가 일본 시장에서의 자사 시장점유율이 단지 7~8%에 불과한 것은 후지사가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일본의 관련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필름 시장 70%, 인화지 시장 56%)하여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불공정거래관행에는 환불 및 할인제도, 재판매가가격유지행위, 수평적 가격유지 협정, 타사제품취급자에 대한 보복행위, 소매상에 대한 압력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일본의 경쟁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함으로써 후지사의 유통시장 장악을 간접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코닥제품의 경우 브랜드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인지도는 높으나 후지사의 배타적 거래관행으로 인한 일본내 유통채널 참여의 봉쇄로 후지필름사와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 73~95년간 56억불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는 미·일 자동차협상이 타결(6월 28일)된 뒤 일본 필름 시장에 대한 조사방침을 발표하여 향후 1년간 조사와 협상을 병행할 계획(USTR은 조사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함)이며, WTO에의 제소 또는 301조에 의한 통상보복조치중 어떤 방법이 가능한 지를 검토중에 있다.

그러나 반경쟁적 관행의 경우 WTO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직접 보호받을 수 없는 실정이며 301조에 의한 제재조치는

보호무역주의적 일방적 조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기 때문에 고심중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 필름 시장이 폐쇄적이라는 미측 주장에 반발하면서 미 통상법 301조에 의한 조치는 일방적 조치로써 WTO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최근 일본국내에서 수입제품의 판매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닥사의 일본시장점유율이 낮은 것은 코닥사가 일본시장공략에 실패했기 때문이며 후지사의 미국시장점유율도 10%에 불과한 점을 들어 미의회에 해명서를 제출하는 등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외국내의 반경쟁적 거래관행에 대해 미국이 301조에 의한 조사를 개시한 최초의 케이스로써 향후 미 정부는 주요 교역국에서의 반경쟁적 거래관행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자국의 엄격한 독금법의 역외적용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강력한 무기인 통상법 301조에 의한 보복조치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최근에 UR이행법 제정을 통해 301조 발동 대상이 되는 외국에서의 반경쟁적 거래관행의 범위를 확대하고(재화에서 서비스까지로 확대) 통상법 301조 발동의 근거가 되는 NTE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에 경쟁제한적 거래관행분야에 대한 별도의 Section을 설치토록 하여 외국

에서의 반경쟁적 거래관행에 대하여 301조에 의한 보복조치를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 발간한 NTE보고서의 반경쟁적 거래관행 Section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광고배정, 사업자단체의 반경쟁적 거래관행, 한국정부의 경쟁법집행의 미약문제 등을 한국내에서 불공정거래관행으로 지적한 바 있어 미국정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다.

(95. 7. 14.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법무부, 「마이크로소프트」사 라이선싱 조항 조사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들로부터 윈도우즈 95의 라이선싱과 관련하여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왔다는 관행을 조사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장으로는 이 계약조항에 관해 약 150개 컴퓨터 제조업체가 합의했다는 것이다.

라이선싱 계약 조항에 관한 이러한 의문은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이 윈도우즈 95와 관련하여 벌이고 있는 조사범위가 애초에 알려진 것보다 넓음을 암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신이 지난 주에 발표한 성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을 뿐 그 이상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회피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법무부가 당해 계약 조항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당해 조항은 컴퓨터 제조업체 및 주문자상표부착 생산업체(OEMs)들이 윈도우즈 95의 배포나 사용과 관련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사, 기타 컴퓨터 제조업체 또는 최종사용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라고 동 회사는 언급하였다.

이 회사는 이와 같은 조항은 1990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계약에 포함되어 왔다고 밝혔다. 상황에 밝은 한 소식통은 몇몇 주요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최근 법무부에 찾아가서 자신들의 사업에 필수적이 될 윈도우즈 95를 구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특허권을 포기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말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법률 고문인 William Neukom은 금요일(6월 9일) “우리는 우리 회사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문제되고 있는 당해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한 OEM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OEM에 대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Neukom은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온라인 서비스 관련계획을 옹호했는데 그는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옹호가능하다”고 말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참여는 가격 및 품질에 의한 경쟁을 높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95. 6. 12.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후로즌디저트 제품 부당 표시 동의 심결

미연방거래위원회(FTC)는 Eskimo Pie Corp의 후로즌 디저트 제품인 「Sugar Freedom」의 부당표시에 대하여 동의 심결키로 합의하였다. Eskimo 사는 「Sugar Freedom」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의 칼로리가 현저히 낮고,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에 유용하며 전미당뇨병환자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의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요지의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수준의 전지방 및 불포화지방이 함유되고 있는데도 이를 명백히 하지않고 허위 또는 오인을 줄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FTC는 심결을 하면서 Eskimo사는 「Sugar Freedom」이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에 유용하다고 표시할 경우에는 ① 「Sugar Freedom」의 지방과 불포화지방의 함유량이 적지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함유량 ② 미연방의료품·식품국(FDA)이 「Sugar Freedom」의 라벨 위에 이러한 표시를 의무화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

의 칼로리가 적지 않은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표시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Eskimo사는 FDA의 영양표시 규칙에 따라 FDA가 특별히 허가한 표시를 할 수 있으며 동사는 기만적이 아닌 방식으로 전미당뇨병환자협회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95. 5. 8. ATRR)

미법무성,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한 「인투이트」사 매수를 제소

미국 법무성 반트러스트국은 지난 4월 27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한 「인투이트」사의 매수(20억불 상회)가 개인용 재무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기술 혁신 편익을 상실케 하고 높은 가격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인투이트」는 개인용 재무소프트웨어 판매회사로서 가정용 PC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제1위인 「Quicken」(1994년 시장점유율 약 70%)을 판매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제2위인 「Money」(1994년 시장 점유율 약 22%)를 판매하고 있어 양사를 합할 경우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투이트」 양사는 그동안 개인용 재무소프트웨어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했다.

개인용 재무소프트웨어란 소

비자가 가정에서 재무에 관한 기록과 거래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994년도 중 당해시장에서의 매출액은 약 9,000만불 수준이다.

반경쟁적인 결과를 경감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동사의 「Money」 관련 자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노벨」사(유타주 소재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양도하겠다고 진술했으나 상기 제소장에서는 「노벨」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유효한 경쟁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벨」사에 대한 자산 양도는 「인투이트」사 취득의 반경쟁적 효과를 방지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법무성은 상기 사건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재판소에 반트러스트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다. 이에따라 양사는 당해 매수계획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법무성은 소장에서 매수가 성립되면 개인용 재무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신규 참여자가 경쟁 가능한 상품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같은 시장에서의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양사 이외에 2개 상품(H&R Block Financial사의 「Managing Your Money」와 Computer Associates사의 「Simply Money」)이 개인용 재무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므로 경쟁상 주요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사법성은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의 제소가 있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5월 20일 「인투이트」의 인수를 포기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독점은 오래 가지 않으며 양사가 주력한 분야가 이제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하이테크 분야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던 기업들이(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독점적 위치에서 물러난 사례를 볼 때 법무부가 반독점법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개인용 재무처리를 위한 수표장 소프트웨어 상품은 많은 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동수표기장인 전자수표장, 개인자산보고, 개인재무보고, 자동청구금지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능은 소비자의 모든 거래기록을 자동화 또는 네트워크화하도록 할 수 있다. 「인투이트」사는 세금등 기업회계 관계의 많은 재무소프트웨어 상품을 제작하고 있으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러한 종류의 소프트웨어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95. 4. 27. 미 법무성 신문)

미 정부, 지적재산권에 관한 반트러스트법 운용지침 발표

미국 정부는 4월 6일, 지적재산권에 관한 반트러스트법(미국 독점금지법)의 운용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 기업의 기술혁

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기업체휴 및 합병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는 국제 라이선스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할 방침을 명기하고 있어, 미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독점법을 활용하려는 클린턴 정권의 태도를 명확히 했다.

운용지침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지적재산권에 초점을 맞춘 지침의 공표는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법무부 반트러스트국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작년 8월에 내놓은 원안을 기초로하여 최종결정된 것이다. 4월 5일에 발표된 기업의 국제적 사업활동지침과 합하여 클린턴 정권 독점금지정책의 기본방침이 모두 제시되었다.

이번의 지침은 「기술혁신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제품시장과 직접 관계없는 특허 및 저작권의 거래에 대해서도 독점금지당국이 이를 감시할 방침임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신체품으로서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연구개발의 경쟁을 제한하는 라이선스 계약은 독점법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95. 4. 7. 일본경제신문)

일본 정부, 독점금지법 시행령 개정

일본 정부는 지난 1995년 4월 21일 각의에서 현행 독점금지법 시행령을 개정 주식보유총액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회사의 규모 요건인 자본금액 및 순자산액을 대폭 상향하였다.

이 개정 내용을 보면 독점금지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주식보유총액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회사는 현행 자본금 100억엔 이상 또는 순자산 300억엔 이상 주식회사(금융회사 제외)에서 자본금 350억엔 이상 또는 순자산 1400억엔 이상의 주식회사(금융회사 제외)로 대상이 바뀌게 되며 개정법은 1995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기준액의 대폭적인 인상에 따라 764개 기업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매수 및 출자 등이 쉬워진다. 기업의 주식보유 규제는 대기업에 의한 강력한 사업지배력을 갖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어장치를 마련할 목적으로 77년에 독점법을 개정하면서 포함시킨 것이다.

규제대상인 기업은 순자산 또는 자본금 중 어느 쪽이든 많은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보유주의 매각 등에 의해 조정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예를 들면 자본금 80억엔, 순자산 400억엔의 기업의 경우, 총

액으로 400억엔을 상회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 확대에 따라, 규제를 받는 기업수가 77년 당시의 약 260개사로부터 약 1,030사로 확대되었으며 동경증권시장 1부 상장기업의 태반이 규제대상이다.

경제계는 이 제한이 Restructuring(사업의 재구축)을 위한 합병 및 매수, 모험기업에의 투자 등의 장애가 된다고 하여 기준인상을 요구하여 왔으며, 공정취인위원회도 제도를 도입한 이래 17년 이상 되었는데도 한번도 기준액을 재검토한 적이 없어 「경제실태에 걸맞지 않게 되었다」(경제부)고 판단, 재검토를 결정하였다.

공정취인위원회에 따르면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규제를 받는 기업은 현재 1,025개사로부터 약 261개사로 줄어든다. 규제 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764개사는 자본금 및 순자산액을 상회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별도의 주식보유 규제가 있으므로 이번의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취위, 공사 측량 관련 담합을 이유로 22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작년 2월에 독점금지법에 의거하여 도쿄, 오사카, 오카야마, 히로시마에 있는 22개 업체

가 향천현 등이 발주한 도로공사 등의 측량, 조사와 관련하여 담합을 하여 왔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 4,352만엔의 납부명령을 3월 29일자로 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공취위에 따르면 도로, 하천의 측량 및 토목설계 등을 하도급받은 향천현 최대업체인 「五星」등 저명업자 25개 업체는 91년 1월부터 94년 1월에 걸쳐 입찰 전에 회합을 열어 수주업자를 결정하여 왔다는 것이다. 댐 이외 지역의 지질조사 업무를 하도급받은 저명업자 12개 업체도 91년 1월부터 94년 1월에 걸쳐 동일한 행위를 하여 왔다.

이들 업체들은 담합의 결과 거의 100%를 수주하였고, 금액은 3년 동안 약 39억 2,500만엔에 이른다고 하였다. 과징금액이 50만엔에 이르지 않는 경우 면제되기 때문에, 이번 권고를 받은 35개 업체 중 22개 업체에만 납부명령이 내려졌다.

(95. 4. 1. 일본경제신문)

공정취인위원회, 부당한 이증가격 표시 이유로 3회에 배제명령

보석·귀금속 및 부인·아동복 등을 판매하는 대기업인 삼귀(동경도 풍도구, 사장 木村和去)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부당한 이증가격표시라고 하여, 일본공정취인위원회로부터 4월 18일 경품표시법위반으로 배제명령을 받았다. 공취위의 조사에 따르면, 삼귀는 작년 6월 신문 광

고에 「18K 다이아몬드 귀걸이 비회원가격 5만엔 회원가격 2만4천980엔」 등으로 광고했는데, 「회원가격」과 「비회원가격」을 병기하여 회원은 큰 폭으로 싼 가격에 구입가능한 것처럼 표시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가게 앞에서 주소, 성명을 기입하면 간단히 회원이 되며 「비회원가격」에 판매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취위는 이를 「실제의 판매가격이 현저히 저렴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표시」로 인정했다.

광고지에는 회원가격이 비회원가격보다 최고 96% 할인된 것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삼귀는 이와 같은 부당한 이중가격표시를 93년 10월부터 작년 말까지 행하고 있었으며 공취위는 이 사건에 대해 작년 6월부터 조사한 바 있다. 동 회사는 65년에 설립되어 오끼나와현을 제외한 전국에 「銀座 주에리마키」 및 「銀座 주와이요 쿠츠투 마키」 등 보석·귀금속류를 판매하는 770개의 점포 외에 「부티크 죠이」 및 「화나이」 등 직영매장 등 모두 합쳐 1,374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TV광고 등으로도 알려져 있다. 올해 2월 기말결산에서는 매출액이 약 2천 150억엔으로서, 이중 보석·귀금속류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95. 4. 19.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토목콘크리트블럭
공업조합의 공동행위에 권고 심결**

공정취인위원회는 1995년 3월 8일 秋田縣의 토목콘크리트블럭 공업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하는 각종 콘크리트블럭에 대한 판매가격의 유지인상과 출하 비율의 결정 등 공동판매사업을 한데 대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공동행위라 하여 권고 심결을 하였다.

이 공업조합은 ① 조합원이 취급하는 모든 블럭을 조합이 매입하여 판매하되 조합원별 매입량은 상기 출하비율에 따라 월별로 결정하고 ② 조합원별 판매량도 동출하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③ 조합원이 秋田縣 블럭공조 이외의 사람에게 자기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벌칙금을 징수하는 등 제재를 과하고, 벌칙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상기 출하비율에 따라 사업운영관리자금을 징수하기로 하는 등 지난 6월 1일부터 공동행위를 하여 왔다.

이러한 공동행위 결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매년 판매가격을 결정 일수판매사업을 실시해 옴으로써 독금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95. 공정취인 4월호)

**공취위, 석유상업조합의
공동 행위에 대하여 권고 심결**

공정취인위원회는 千葉縣 석유상업조합 野田支部가 계획적으로 석유 제품의 시항에 대하여 정보교환을 하면서 보통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는데 따른 대응책

으로 1994년 10월 21일 개최된 지부회에서 ① 11월 1일부터 지부회원의 회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현금판매가격을 리터당 115엔으로 회원에 대한 현금판매가격은 이보다 싼 리터당 110엔으로 인상하고 ② 상기 인상된 판매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월 25일까지 종전의 가격 표시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가격표시 간판을 게시하되 지부회원의 가격인상 상황을 실시키로 하는 등 공동행위를 하였으나 野田支部가 1995년 4월 16일 개최된 지부회에서 이 결정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권고 심결하였다. 상기 공동행위는 독점금지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95. 공정취인 6월호)

구주위원회편

**구주위원회, 웨리 운항에 관한
거래 거절에 잠정조치 명령**

구주위원회는 5월 18일 프랑스 부르다뉴 지방 「로스코프」항의 운영관리자인 Morlaix 상공회의소에 의한 아일랜드 컨티넨탈 그룹사(ICG, 아일랜드의 웨리운항회사)에 대한 항만 사용 거부사건에 대하여 6월 10일까지 동항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 명령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로스코프」항은 프랑스 부르다뉴 지방과 아일랜드간의 웨리

수송에 적합한 유일의 항구로서 동 항로에서 웨리를 운항하고 있는 프랑스 사업자는 1사(Britany Ferries)뿐이다. ICG사는 금년 여름부터 웨리를 운영키 위하여 작년 11월 Morlaix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로스코프」항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금년 1월 동 상공회의소가 상기 협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ICG는 운항 방침을 이미 발표 예약까지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ICG사는 구주위원회에 경쟁법 위반으로 이를 신고한 바 있다. 구주위원회는 Morlaix 상공회의소에 의한 동 행위가 서비스의 공급저절에 해당 EEC 조약 제86조에 위반되므로 6월 10일까지 ICG사에게 「로스코프」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하였다.

(95. 공정취인 7월호)

구주위원회, 프랑스의 Credit Lyonnais 구제 계획 허용

EU 독점금지 당국은 EU 사상 최대의 정부 구제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최대 은행인 Credit Lyonnais에 대한 경이적인 450억 프랑(92억 달러) 규모의 구제계획을 승인하였다. 유럽위원회는 프랑스 국유인 이 은행에 대하여 구제의 조건으로 1998년 말까지 프랑스 소유가 아닌 은행자산 중 최소한 35%를 매각할 의무를 부과했다.

구주위원회 관리들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얻어냈다고 하는 서면 약정에 따르면 이 35% 중 절반(대략 2,200억 프랑의 자산)은 Credit Lyonnais의 유럽 은행 네트워크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비록 많은 분석가들은 당해 조건이 엄격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프랑스 경제성 장관인 Alain Madelin은 파리에서 있는 기자회견에서 이를 환영하면서 “당해 회복 계획으로 인해 Credit Lyonnais는 자신의 핵심 사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Credit Lyonnais와 경쟁 관계에 있는 프랑스 은행들은 상기 조건들이 충분할 정도로 엄격하지 않다고 불평했다.

프랑스 정부의 일괄 원조계획에 관하여 오랜 숙고 끝에 승인된 이번의 구제계획은 유럽위원회에 대하여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국가보조금을 강력히 억제하려는 완고한 자세와 Credit Lyonnais를 파멸시키게 되리라는 우려 사이에서 갈등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당해 결정은 이 두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또한 오랫동안 국가의 경제조직에서의 주요 역할때문에 다루기에는 너무 민감한 것으로 여겨졌던 은행 부문에 대해서도 유럽위원회가 EU 국가보조 규칙을 적용하게 된다는 명백한 신호가 되고 있다.

EU 경쟁정책 담당위원인 Kar-

el Van Miert는 당해 승인을 발표하면서 “이는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인정했으며 그동안 승인된 것 중 최대 사건이라고 하면서 “동 위원회가 EU 국가보조 규칙을 은행 부문에 전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것이다.”라고 하였다.

분석가들 및 경쟁법 전문 변호사들은 당해 결정이 유럽의 은행 분야에 광범한 함축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는 분명히 중요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국제 법률회사인 Freshfields의 브뤼셀 지사 소속 경쟁법 전문가인 John Davis는 말하였다. “이는 다른 회원국들에게 국가보조규칙이 국유 은행이라는 민감한 영역에도 적용될 것임을 알리는 것이다.”

비록 국가 보조금 지급 관행은 EU에서 널리 퍼진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15개 회원국간의 경쟁을 왜곡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작년에 에어프랑스 및 Cie. des Machines Bull 사에 대한 막대한 구제계획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국가보조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Van Miert는 유럽위원회가 프랑스 정부의 계획이 동 은행을 호전시킬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후에야 당해 구제계획이 허용되었다고 말했으며 또한 프랑스 정부가 동 은행이 활력을 되찾을 경우 민영화를 단행하겠다고 서

약한 것에 만족한다고 언급했다. Madelin 프랑스 장관은 동 은행이 더욱 일찍 매각될수록 좋다고 하였지만 민영화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은행은 1980년대 후반의 무모한 팽창 전략의 결과 지난 3년간 막대한 손실을 입었었다.

(95. 7. 27.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구주위원회, 가격카르텔 여부에 대한 신문용지 제조업자 실사

구주위원회는 4월 26일 가격 카르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문용지 제조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함으로써 심사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신문제작원가의 약 25%를 점유하는 신문용지 가격의 급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신문발행업자와 유럽 각국정부로부터의 신고에 의한 것이다.

작년 말부터 신문용지 가격이 30% 이상 상승하였으며 신문발행업자는 7월부터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었다. 신문용지 제조회사들은 가격이 급상승한 것은 원재료 가격, 특히 펄프 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주위원회의 경쟁당국은 4월 25일 같은 시간에 구주업체의 신문용지 제조업자의 사무소 40개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이 된 주요 회사로는 노르웨이의 Norske Skog, 스웨덴의 SCA, Stora 및 Modo, 네

델란드의 KNT BT, 영국의 Bridgewater Paper외에 필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의 회사들이 포함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현장검사는 통상카르텔 사건의 심사개시의 제1단계에 해당된다. 신문용지 메이커들은 가격카르텔을 부정하고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가격상승의 이유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95. 4. 27. FT)

구주위원회, 프랑스·독일 텔레콤 합작회사 불인가 방침 확인

구주위원회의 Karel Van Miert 경쟁정책담당위원은 5월 24일 국유전기통신 사업체인 프랑스의 텔레콤과 독일의 텔레콤이 제휴하여 세계적인 비즈네스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위한 합작기업 Atlas(시장 점유율 45%)의 설립하는 계획이 EU 경쟁법에 위반되어 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동안 Atlas는 EU 경쟁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기 위하여 구주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왔다. 영국의 British Telecom(BT)은 구주위원회에 정식 신고 상기 2사의 합작회사 설립이 전기통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거래에는 미국 주재 전화회사인 Sprint사의 주식 20%를 42억불에 취득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영국편

영국 공정거래청, 법원에 서적 재판협정 재심 청구

영국의 카스버그 공정거래청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제한적 관행법원에 서적정가판매협정(Net Book Agreement : NBA)을 폐지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할 수 있는 허가절차를 밝혔다.

제한적 관행법원은 재판매가 격유지행위를 허용한 후 지금까지 30년 이상 NBA를 재심사한 일이 없었다. NBA는 소매업자가 출판업자에 의해서 정해진 가격을 하회하여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제한적 관행법원은 1962년부터 NBA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판단, 재판매가 격유지행위를 인정하여 왔다.

카스버그 장관은 지금까지 인쇄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도매업도 성장하였으며 재고 유지를 할 수 있는 서적의 「체인」이 발전했기 때문에 제한적 관행법원에 의한 NBA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관련된 사정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1976년 재판매가 격법에 의한 재판매가 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제한적 관행법원은 명령으로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 왔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서적과

의약품이 있으며 각각 1962년과 1964년부터 인정되어 왔다.

(Doing Business in Europe New Developments 95년 5월호)

프랑스편

프랑스 경쟁평의회, 공동 행위에 제재금 부과

프랑스 경쟁평의회는 Generale de Eau사의 자회사 및 관련회사가 1992년중 지중해 연안의 가정용 쓰레기를 수집하면서 입찰담합을 하였다고 하여 700만 프랑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5월 15일에 발표된 경쟁평의회 결정에 따르면 제재금이 부과된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① Start-Barlo 85만프랑 ② Societe Ajureenne de Nettoiement 100만프랑 ③ Silim Environment 120만프랑 ④ SCP 150만프랑 ⑤ Soneco 35만프랑 ⑥ Sonevie 190만프랑

경쟁평의회에 의하면 상기 7개사는 상업상으로는 독립된 기업체이나 법적 또는 재무상으로는 관련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음폐하여 왔으며 상기 7개사는 개별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호 상담을 하였다는 것이다. Generale de Eau사는 세계 제일의 공공서비스 관계의 공기업이며 경쟁회사인 Lyonnaise de Eaux사와 합해서 프랑스에서 가정용 쓰레기 수집시장의 거

의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당해 분야에의 경쟁이 왜곡되고 있다하여 관심을 두어 왔었다.

(95. 5. 18. ATRR)

이탈리아편

이탈리아 경쟁 시장보호위원회, 독점금지법 운용강화 방침

이탈리아 기유리아노 아마도 (Giuliano Amato) 경쟁·시장보호위원장은 5월 11일 1994년의 경쟁·시장보호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경쟁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관심있는 분야로는 전기통신, TV 방송 및 전력과 같이 곧 민영화하게 될 공익사업을 열거하였다. 이 연차활동보고서는 위원장 취임후 처음 발표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동 위원장의 코멘트등은 다음과 같다.

① 의회는 자유시장에 대하여 지불한 립서비스와 구주위원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반경쟁적 특권을 폐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

② 인푸리 네트워크에의 진입을 포함하여 전기통신분야를 보다 자유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생각임

③ 현행경쟁법규 중 변경이 필요한 분야로서 유선TV방송이

있으며 규제적인 범규가 유선 TV방송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 때문에 이탈리아는 주요 구라파의 파트너보다 뒤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음

④ 경쟁·시장보호위원회가 주목한 사례는 시장원리에 의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쟁자로부터의 신고라고 할 수 있는데 신고의 대다수가 기업의 특별한 규제상의 특권 또는 국가로부터의 면제를 취득한 사례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현황은 시장경제의 후퇴를 의미함

⑤ 업무가 현저히 증가하여 위원회가 집계한 합병건수는 작년엔 501건, 작년에는 597건, 금년 1/4분기에는 171건인데 이중 금지된 합병건수는 하나도 없음.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에 대해서는 합계 14건이 집계되었으며, 우유, 영화, 액화석유가스의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보호적 특권의 온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의약국과 지적직업단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음

상기 활동보고서에서는 보험회사의 비경쟁적 행위, (Un Competitive Activities) 시멘트 카르텔, 공항의 게이터링 그리고 웨리의 불공정한 할인행위 등 독점행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95. 5. 12. FT) ■